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관의장	
선	
람	

제 1986 호 1996. 7. 31.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일법예고

제 1996-283 호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일법예고 3

● 고시

제 1996-206 호 종로구운니동미술관전립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4

제 1996-210 호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고시 9

● 공고

제 1996-225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0

제 1996-234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0

제 1996-246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0

제 1996-269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1

제 1996-270 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11

제 1996-271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1

제 1996-272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2

제 1996-273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2

제 1996-274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2

제 1996-275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3

제 1996-276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3

제 1996-277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3

제 1996-278 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공용의청사)실시계획공람 14

제 1996-279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14

● 구고시

제 1996-33 호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종로) 15

제 1996-3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종로) 15

~(이면계속)

공											
람											

서울특별시

0407

제 1996-30 호	도시계획사업(주교동75-3~238-2간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중구)	16
제 1996-31 호	도시계획사업(신당1동304-802~304-204간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중구)	18
제 1996-34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지적승인(용산)	19
제 1996-3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에 따른지적승인(용산)	19
제 1996-45 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성동)	20
제 1996-6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성북)	20
제 1996-39 호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강북)	21
제 1996-40 호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강북)	21
제 1996-4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봉)	22
제 1996-5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서대문)	22
제 1996-52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서대문)	24
제 1996-28 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24
제 1996-2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양천)	24
제 1996-2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금천)	25
제 1996-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영등포)	25
제 1996-61 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영등포)	26
제 1996-62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지적승인(영등포)	27
제 1996-3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	27
제 1996-1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시설)지적승인(송파)	28
제 1996-33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확인인가(강동)	29
● 구 공 고		
제 1996-163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계획공람(종로)	29
제 1996-119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광진)	30
제 1996-120 호	건설업양도인가(광진)	32
제 1996-151 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영등포)	32
제 1996-218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취소 및 변경(서초)	33
제 1996-212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3
제 1996-154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4
제 1996-15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4
제 1996-15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4
● 사업소고시		
제 1996-76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35
● 입찰공고		
제 1996-1 호	공사입찰(구로소방서)	35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금천구·서초소방서)	36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한입동에 관한사무처리규정알림(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43	
● 민사발령		
		44
● 절정재판		
		51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83호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제정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개정(96. 5. 30)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었기에 그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육시설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함.

(단위: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신청	건	100,000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건	30,000
	등록신청	건	50,000
	변경등록신청	건	20,000
	변경등록신청	건	20,000
기타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	건	50,000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건	20,000
	등록신청	건	30,000
	변경등록신청	건	10,000
신고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건	5,00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사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종로 1가 31 본관 3층·우편번호 100-744·전화번호 731-6491·FAX. 731-6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6-206호

종로구운니동미술관건립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운니동 미술관건립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계획목적

본 계획의 목적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및 '96 서울 특별시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따라 '96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종로구운니동미술관건립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시행 조건, 사업시행자 자정방법 등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사업개요

가. 용어정의

- (1)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을 의미함.
- 공공부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의미

함.

- (2) 사업신청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의미함.
- (3) 총사업비는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조사비, 설계비, 준공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조사비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를 의미함.
 - 설계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준공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함.
 - 보상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임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함.
 - 부대비는 환경영향평가비 및 강리비 등의 제비용을 의미함.
 - 운영설비비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을 의미함.
 - 제세공과금은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함.
- 나. 사업내용
- (1) 사업명: 종로구 운니동 미술관 건립사업
- (2) 위치: 종로구 운니동 114-2, 98-22, 23, 24, 33, 47, 48, 79, 98-80, 81
- (3) 부지면적: 1,918평
- (4) 건축면적: 15,000여평

<p>(5) 사업기간 : 1996년 ~ 1999년(2000년 개관)</p> <p>(6) 사업비 : 1,900억 원</p> <p>(7) 사업비부담 :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다. 사업 추진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96. 7 (2)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제출 : '96. 9 (3) 사업시행자 설정 : '96. 9 (4) 실시계획 승인 : '96. 11 (5) 공사 착공 : '96. 11 (6) 공사 완공 : '99. 12 <p>※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p> <p>3.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조건</p> <p>가. 사업신청방법 및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자는 비영리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법인 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신청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 (3) 본 사업은 민간부문 단독으로 법인을 구성, 시행함. (4) 사업신청자는 총 투자비에 대한 출연자의 투자확약서,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시 개념설계 	<p>서를 첨부하여야 함.</p> <p>나. 투자 및 운영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투자 사업신청자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2)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서울특별시의 지원요구사항을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음. (3) 소유권 귀속 민자유치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미술관 및 부대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함. (4) 완공시기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여 준공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 중 천재지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p>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2)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시 또는 공익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p>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p>
--	--

수 있음.

- (3) 서울특별시는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저급보증서)을 납부하거나 연대보증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가.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1)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여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에 의해 실시함.
 -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2) 서울특별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서울특별시가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사업신청자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결과에 현격

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사업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도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수신청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의 평가점수가 60% 미만일 경우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재접수시킬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사업신청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본 계획의 따로붙임 "표2"의 "사업계획서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제출 부수

- 가)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와 사본 5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나)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서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요소

- 가)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은 1,000점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600점 미만 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재원조달계획 항목은 사업신청자의 신용상태, 자기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 타인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의 요소들로 구성됨. - 사업신청자의 신용상태는 사업신청자 및 주된 출연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함. - 자기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은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 투입액(내부유보자금, 재산매각자금)과 출연자 지원금 내용을 평가하기 위함. - 타인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은 타인자본 조달방안(금융기관 차입과 대출확약서의 내용) 및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함. 다) 관리 및 운영계획 항목은 사업관리계획, 시설운영계획, 소장품 확보계획의 요소들로 구성됨. - 사업관리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평가하기 위함. - 시설운영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유사 시설 운영 경험 및 운영기능 개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소장품 확보계획은 시설 건립 후 즉시 미술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라) 건설계획 항목은 공정계획, 시공자 전설계획의 요소들로 구성됨. - 공정계획은 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적절한 공사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예정건설기간, 동의 적정성 등을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 전설계획은 시공자에 대한 현황과 본 공사에 투입할 기술인력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경험 등을 평가하기 위함. 마) 공익성, 창의성 항목은 사회교육계획 수준 및 시설물 건설의 창의성 요소들로 구성됨. - 공익성은 사회교육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시설물 건설의 창의성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창의적인 요소(설계창의력, 시설물의 조형미 등)를 평가하기 위함. <p>(2) 평가의 일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세부평가항목은 따로붙임 “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평가함. 나) 평가기준등급은 A, B, C, D, E의 5 단계로 구분하며, 기준등급에 +, -를 부여하여 평가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등급을 세분화하는 경우 +는 기준등급에 5%를 가산하고 -는 4%를 감함. (A : 95, B : 85, C : 75, D : 65, E : 55) 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마) 실적관련 평가시에는 최근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함. 바) 평가에 따른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있는 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고시일·현재를 기준으로 함. 사) 본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시 총점의 5%를 가산함.
--	--

5.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가. 단계별 추진일정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가) 기간 : 1996년 7월 26일(금) 14: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과
2층 회의실(서소문별관)

(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5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함.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함.

다) 배부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과(서소문별관)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일시 : 1996년 9월 5일(목) 18:00
한나) 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과
2층 회의실(서소문별관)

다) 방법 : 사업신청자 또는 그가 위임하는자가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함.

(5)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서울특별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서면통보함.

(6)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설계 및 기타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 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 실시계획 승인, 고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비용 부담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제원조달계획(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자의 신용상태 • 사업신청자의 신용상태 • 주된 출연자의 신용상태 - 자가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 • 종부자비 중 자가자본투입액 • 자가자본조달 내용 - 타인자본조달계획의 타당성 • 타인자본조달방안 • 자금차입의 타당성 	100 (40) (60) 200 (120) (80) 100 (60) (40)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평 가 함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관리 및 운영계획(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조직 • 전문인력 확보계획 - 시설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설 운영경험 • 미술관 운영방향 - 소장품확보계획 	120 (50) (70) 180 (100) (80) 100
건설계획(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공사기간의 적정성 • 부지확보계획 - 시공자 건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현황, 기술인력 투입계획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 (20) (30) 50 (20) (30)
공익성 및 창의성(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공익성 - 시설건설에 있어서의 창의성 	50 50
계		1,000

◎서울특별시고시제 1996-210호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승인된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단위: 원)

연 번	회 계 법	예 산 액
1	일반회계	5,145,061,510,000
2	기타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2,700,293,000,000 1,596,300,000,000 220,910,000,000 335,000,000,000 313,383,000,000
3	공기업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특별회계 	767,133,000,000 767,133,000,000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공 고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 호 : (주)인산가 서울지점
2. 대 표 자 : 김윤세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4-8 화성빌딩 4층

변 경 전

변 경 후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4
투원타워 B동 1524호
Tel : 574-7738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8
화성빌딩 4층
Tel : 448-3274

4. 변경일자 : 96. 6. 22

5. 변경사유 : 사업장 협소로 인한 사업장
이전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 호 : (주)삼보유토피아
2. 대 표 자 : 고윤석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방배동 908-10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34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 경 전

변 경 후

- 상호
(주)삼보유토피아

- 상호
(주)한초인터넷내셔널

4. 변경일자 : 96. 6. 27

5. 변경사유 : 자체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 함.
(삼보컴퓨터 계열사로 오인)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 호 : (주)상한유통
2. 대 표 자 : 이덕우
3.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1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46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상한유통 -- 후원수당 : 7단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유로메이트 -- 후원수당 : 5단계지급
4. 변경일자 : 96. 7. 3 5. 변경사유 : 기업이미지 재정비	<p>자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7. 31 서울특별시장</p>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69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1. 상호 : (주)화타유통 2. 대표자 : 유옥자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7-19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 서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 유기근
4. 변경일자 : 96. 7. 19 5. 변경사유 : 이사 사임	4. 폐업일자 : 96년 7월 20일 5. 폐업사유 : 경영부실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0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1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포코물산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7 3. 대표자 : 주경호	1. 상호 : (주)엔에치비 인터내셔널 2. 대표자 : 이영길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5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 이영길, 박종성 - 지점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 이영길, 이동표 - 지점 : 설치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팔용동 168-7 - 전화번호 : 0551-99-8241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4. 변경일자 : 96. 7.
5. 변경사유 : 경영의 효율적 관리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한초인터내셔널
2. 대표자 : 고윤석
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0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2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수당 • PV가격의 8%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수당 • 공급가격의 34.54% 지급

4. 변경일자 : 96. 7. 19
5. 변경사유 : 효율적인 판매활성화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큰사람
2. 대표자 : 이은경
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8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3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 이은경 - 이사 : 이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 임인화 - 이사 : 이은석

4. 변경일자 : 96. 7. 18
5. 변경사유 : 임원 사퇴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나승종합유통
2. 대표자 : 김두만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49-16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4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수당 • 권장소비자가격의 24.5%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수당 • 공급가격의 35% 지급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4. 변경일자 : 96. 7. 19
 5. 변경사유 : 판매활동 촉진 및 사기도모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아디팍스
 2. 대표자 : 최주채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25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5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 후원수당 · PV가격의 38.5%	- 후원수당 · 공급가격의 35%

4. 변경일자 : 96. 7.
 5. 변경사유 :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세정컬렉션
 2. 대표자 : 박덕례
 3.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2-3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6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 후원수당 · 공급가격의 29%	- 후원수당 · 공급가격의 27%

4. 변경일자 : 96. 7.
 5. 변경사유 : 영업방침 변경

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그린피아 코스메틱
 2. 대표자 : 최병화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19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7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전	변경후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19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9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4. 변경일자 : 96. 7.
5. 변경사유 : 업무공간 확대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8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공용의청사)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44호(95. 12. 6)로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1996-14호(96. 4. 2)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공고기간 내에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지역경제국 농수산유통과(750-8401)·강서구 건설관리과(600-6400~2), 공동주택과(600-6380~2)]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96. 7. 24~8. 6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강서구, 외발산동 96 일원(유통업무설비)
(2) 강서구 외발산동 205 일원(공용의 청사)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유통

업무설비, 공용의 청사)

(2) 사업의 명칭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강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공사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유통업무설비 : 부지 175,735㎡(수협 30,345㎡ 포함)

건물 55,573.12㎡(수협 12,233㎡ 포함)

(2) 공용의 청사 : 부지 54,519㎡
건물 8,056㎡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199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람장소에 비치

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2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공람장소에 비치

자.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및 강서구 건설관리과, 공동주택과 비지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279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전기공사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실효처분하였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시	소재지	비고
1481	(주)풍한기 업 술	정두봉 김태환 윤정윤	면허실효	96. 7	광진구 능동 131-8	자진반납
1774			면허실효	96.7	금천구 지흥3동 983-15	자진반납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면허 번호	업체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시	소재지	비고
0836	호근전기 (주)	문원호 권영근	면허실효	96.7.	성동구 성수1가2동 656-701	자진반납

구 고 시

● 종로구고시제1996-33호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4호(96. 5.

3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된 사항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
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면적

정정)하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면과 같이
지적승인코자 합니다.

2.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1996. 7. 31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광장	미관광장	종로구 세종로동 76-2 일대	8,938	
변경	"	"	"	8,944.3	면적차오 정정 중) 6.3m ²

나.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 서울특별
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 도면과 같음.

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종로구청장

● 종로구고시제1996-3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 일대 성
균관대학교 테니스장 신설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학교)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
법 제23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
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

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 명륜동3가 53-

21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 명칭 : 성균관대학교 테니스장 신설공
사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토 지 조 서				사업명 : 주교동 75-3~238-2간 도로개설 : 저축 토지면적 변경 및 누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할 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1	주교동 75-3	대	21.9	31.1	21.9	신순희 외 2	종구 주교동 58 면적 변경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할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	주교동 64-7	대	1.2	0	1.2	박정자 외 3 광진구 구의동 218-35		누락
3	주교동 75-7	대	0.7	0	0.7	신순희 외 1 중구 주교동 58		"
4	주교동 229-3	대	1.9	0	1.9	국 재무부		"
5	주교동 222-3	대	0.6	0	0.6	진용상 중구 주교동 222-2 (근저당권 중구 을지로3가 302 -16 을지로 3, 4, 5가동 새마을 금고)		"

사업명 : 주교동 75-3~238-2간 도로개설 : 저축 토지 지번 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할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변경전	주교동 278-2	대	9.9	9.9	국 재무부		
	변경후	주교동 278-4	대	2.8	2.8	국 재무부		

건물조서

사업명 : 주교동 75-3~238-2간 도로개설(저축 전물 누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할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주교동 229	전물	목조와습	0	1.0	이동식 중구 주교동 229		2층

사업명 : 주교동 75-3~238-2간 도로개설(저축 전물 구조 및 규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용할 면적(m ²)		수용할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주교동 109	전물	불록기와	벽돌기와	84.7	김종대 중구 주교동 108 (근저당권 강남구 신사동 588-17 부국상호신용)		2층

제 1986 호

서

보

1996. 7. 31

◎중구고시제 1996-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1995-14호(95. 6. 3.)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1995-41호(95. 10. 12.)-47호(95. 11.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1동 304-802 ~304-20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노

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중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나.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인가고시근거
신당 1동 304-802~ 304-204간 도로개설 공사	신당 1동 304-802 ~304-204간	B=8m L=100m	95. 3. 6. ~ 97. 3. 5.	중구고시 제1995-14호 (95. 3. 6.)

다. 변경사유

- 1) 저촉 토지 누락

라. 변경내용 : 별첨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할 면적(m ²)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신당동 304-855	도로	8	0	.8	염태련	노원구 상계동 177-42 (압류국)	
2	신당동 304-856	도로	10	0	10	(가처분 소송영 중구 신당동 57 현대 ④ 9-306)		
3	신당동 304-857	도로	6	0	6	(근저당권 국(동작세무서) 영등포구 노량진동 1-197)		

51-18

0424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 용산구 고시 제 1996-34호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49호(96. 6. 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95호(96. 7.
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제 8조 및 서울특별시행

정권한위임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 조서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은 용산구청 도시정책과와 지적
과 및 관할동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용산구청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전용주거지역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388,100	315,880	(감) 72,300
보존녹지지역	용산구 이태원동 259 일대	0	72,300	(증) 72,300
전용주거지역	용산구 한남동 653, 657 일대	75,830	0	(감) 75,830
일반주거지역(1종)	용산구 한남동 653, 657 일대	0	75,830	(증) 75,830

나. 관련도면 계재생략

● 용산구 고시 제 1996-3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79호(96. 6.
28)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제 8조 및 서울특별시행

행정권한위임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자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은 용산구청 도시정책과와 지적
과 및 관할동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용산구청장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고시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 정	학 교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일대	15,634.4	해체(토지대장상 실제면적 15,316.8m ²)
변 경	-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일대	0	

나. 관련도면: 기재 생략

◎성동구고시제1996-45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1. 건설부고시 제153호(90. 4. 2), 서울특별시고시 제357호(94. 12. 27)로 지구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29호(91. 5. 13), 같은 고시 제1994-274호(94. 8. 17)로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된 용봉동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성 동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지구명: 용봉동주거환경개선지구

(2) 위치: 성동구 용봉동 265 일대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학교	성북구 정릉동 산16-1 일대	36,010	서경대학교 일부면적 증
변경	학교		37,275	1,265m ²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학교	성북구 정릉동 산16-36 일대	28,575	일부면적 감 1,265m ²
변경	학교	"	27,310	학교명 변경(대일외고, 정릉여상 → 대일외고, 대일여정)
기정	학교	성북구 안암동 1-2 일대	630,967	고려대학교 일부면적 감 80m ²
변경	학교	"	630,886	

● 강북구 고시 제 1996 - 39호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1992-561호(92. 10. 2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
 243호(93. 8. 9), 같은 고시 제1994-203호
 (94. 6. 20), 같은 고시 제1994-339호(94.
 10. 15), 강북구고시 제1995-38호(95. 10.
 16)로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된 수유
 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
 립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와 수유4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강북구청장

가. 지구명칭 :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	강북구 수유4동 108 일대	15,244	현지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

- 변경 전 93. 8. 9~96. 8. 5
- 변경 후 96. 8. 6~97. 8. 6

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민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

- 공동개량을 일부 분리공동개량으로
변경
-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단독주택 일부
부지 교환에 따른 변경
- 불량건축 기량 치연으로 인한 사업시
행기간 변경
- 마을회관 부지면적 감소에 따른 변경

마. 도 서 : 강북구청 주택과와 수유제4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택과
(901-6380~4)로 문의 바랍니다.

● 강북구 고시 제 1996 - 40호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1992-245호(92. 5. 21)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
 243호(93. 8. 9), 같은 고시 제1994-436호
 (94. 12. 26)로 개선계획수립 및 지구변경
 지정된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시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와 미아2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강북구청장

가. 지구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m ²)	비고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	강북구 미아2동 791 일대	35,567	현지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93. 8. 9~96. 8. 5

변경 후 96. 8. 6~97. 8. 6

다. 사업시행자: 강북구청장

라. 주민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 건축물개량 지역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마. 도서: 강북구청 주택과와 미아제2동
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택과(901-6380~4)로 문의 바랍니다.

1) 사업부지면적: 3,833.40m²2) 대지면적: 3,695.53m²3) 도로개설면적: 137.87m²4) 건축면적: 2,203.38m²5) 연면적: 23,638.21m²

다. 규모: 시장(소매시장)+아파트, 복합
빌딩 지하 3층, 지상 12층 아파트 158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6. 7~1998. 11

5. 의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의 결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도봉구고시제 1996-4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
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
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도봉구청장

-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 사업주체: 도봉구 창동 651-1 창동홍업
(주) 대표 김용범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
(주) 대표 이내흔
- 사업시행자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가. 위치: 도봉구 창동 651-1
- 사업시행면적

◎서대문구고시제 1996-5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서대문구고시 제30호(95. 6. 2)로 인가고
시된 연희1동 520-28~520-50간 외 4개
소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
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주택개량과에 비
치하여 토지 및 전몰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서대문구청장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가. 사업내용

사업의 시행지 위 치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 모	사 업 시행자	사업기간	시설결정	지적고시	변 경	
							시설 결정	지적 고시
연희1동 520-28~ 520-50간 외 4개소	도시계획사업 (도로) 연희1동 520 -28 ~ 520- 50간 외 4개 소 도로개설 공사	B=4~6m L=181m	서대문구청장	95. 3. ~ 96. 12. 31	서대문고시 제33호(94. 6. 13)	서대문고시 제33호(94. 6. 13)	서대문고시 제57호(94. 9. 29)	서대문고시 제57호(94. 9. 29)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별첨조서 참조(단, 기인가 고시된 조서
는 변동 없음)

다. 토지 또는 전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조서 참조(단, 기인가 고시된 조서
는 변동 없음)

토 지 조 서

연 번	지 번	지목	면적 (m ²)	수 용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연희동 산118-52	임야	134	연희동 산118-86	16(공유자지 분 340분지 154)	김창영	동작구 사 당동 162- 81	조순행 (가처 분)	용산구 한 남동 657- 147	누락
				연희동 산 118-87	16(공유자지 분 340분지 154)	"	"	"	"	

물 건 조 서

연 번	물건지	구 조	용 도	건물면적 (m ²)	수용면적 (m ²)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연희동 537-149	평옥개	상가주택	165.15	8m ² 4(1층) 4(2층)	윤두수	서대문구 연희동 537-149	면적 변경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서대문구고시제1996-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서 대 문 구 청 장

- 사업명: 조합주택 건설사업
- 사업주체: 명성·문화연립 연합 재건축조합
- 사업시행위치: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6
의 5필지
- 대지면적: 7,526.1m²
- 연면적: 38,145.73m²
- 규모: 아파트 2동 지하 2층, 지상 18층

5. 사업승인 내역

사업주체 (조합원)	승 인 내 역					
	대지면적	연면적	총 수	규 모	주택형별	세대수
광명연립재건축 주택조합 (28)	1,903.10m ²	6,508.63m ²	지하1층 저상9층	아파트 1동 및 부대시설	22평형: 19세대 28평형: 1세대 32평형: 19세대 39평형: 1세대 43평형: 7세대	47

6. 사업시행기간: 1996. 7 ~ 1997. 10

7. 사업계획 승인일자: 1996. 7. 22

8.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주택건
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사항 등

◎양천구고시제1996-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회복지시설)결정

및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아파트 2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양천구고시제1996-28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
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양 천 구 청 장

- 사업위치: 양천구 신정동 997-6
- 사업명: 주택(재건축) 건설사업계획 승
인
- 사업주체: 광명연립재건축 주택조합 대
표 방진탁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97-6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8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 제3조에 의
거 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양천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
비과(650-3385)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양 천 구 청 장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사용 형태	기능별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62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신월동 197-2	신월동 197-2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설	사회복지시설	양천구 신월5동 9-2	455.6	가정복지관

●금천구고시제1996-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1995-30호 (95. 12.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나,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각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3의 제2호,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및 도시

계획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정비과(890-23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금 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종류	유별	폭원 (m)	연장 (m)	기능	사용 형태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도로	소로	2	8	120	—	—	시홍동 230-52	시홍동 236-15	경미한 가작
변경	"	"	"	"	"	국지 도로	일반 도로	시홍동 230-42	시홍동 238-13	변경

나. 도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지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제1996-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행정 제8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도시정비과(670-3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유별	폭원(m)						
결정	소로	2	8~12	국지도로	53	영등포구 양평동4가 16-1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97	영등포구 신길동 170-16	영등포구 신길동 110-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6	국지도로	97	영등포구 신길동 170-16	영등포구 신길동 110-3	일반도로	일부구간선 형변경편입 면적 17m ²

나. 도면: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제1996-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470호(91. 8. 8)로 변경결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1992-8호(92. 7. 25)로 지적승인된 영등포구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의3, 제3호 가목, 서울특별시

행정관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도시정비과(670-3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세 부 시 설	위 치	규 모	비 고
기 정	철 도	도시철도 (5호선 영등포구청 정차장)	영등포구 당산동 456	7,415ml	
변 경	철 도	도시철도 (5호선 영등포구청 정차장)	영등포구 당산동 456	7,435ml	중 20m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나. 도면 :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제 1996-62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9호(96. 5. 29)로 결정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5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도시정비과(670-3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영등포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적승인조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m)	비 고
결 정	전기공급설비	영등포구 신길동 13-1 일대	3,240	154kV 변전소 (건물지하 2~4층)

나. 관계도면 :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동작구고시제 1996-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6. 7. 31

동작구청장

-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주체
 - 가. 성명 : 현대건설 상도동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 조합장 김경인
 -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동작구 상도동 산 51-2 외 7필지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사업비 (천원)	규 모			비고
					동수	층수	세대수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7,296.9	변경전 : 1,862.38	변경전 : 25,164.142	변경전 : 26,318,573	2	6~15	194	
	(대지면적 : 7,239.9 +도로 : 57)	변경후 : 1,917.00	변경후 : 25,497.612	변경후 : 26,670,934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4. 8 ~ 1996. 8

- 변경후 : 1994. 9 ~ 1996. 11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
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다.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의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
용의 허가

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시장의 개설허가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허
가

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사.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
한 허가

아.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
수도 설치의 허가

6. 사업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생략).

◎송파구고시제1996-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시설)

지적승인및고사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
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전환위원회 규칙 제3
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410-
3385~8), 시민봉사실 및 관할 동사무소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96. 7. 31

송파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기능	사용 형태	비고
기정	광로	3	79	40	310	장지동 602	장지동 567			• 곡선구간 도로선형 (곡선환경) 변경
	대로	2	87	30	300	장지동 567-3	장지동 586-10 (시계)			
변경	대로	2	87 ^a	30 ~60	610	장지동 602-29	장지동 586-10 (시계)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 광로를 대로에 흡 수 통합(폭 30~ 40m→30~60m 연 장 610m)

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송파구 장지동 233-5 일대	57,245	

다. 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송파구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 도면과 같음)

● 강동구고시제 1996-33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서울시고시 제1990-49호(90. 2. 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강동구고시 제1990-3호(90. 3. 16)로 지적승인 고시된 강동구 둔촌동 79-2 일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신청이 있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자 강동구공고 제1996-119호(96. 6. 22)로 14일간 공람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동법 제23조제6항,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7. 31

강동구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79-2 의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
- 명칭 : 삼성생명(주) 둔촌동 어린이집·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 성명 : (주)삼성생명 대표이사 김현 출

라.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2,441m²

- 건축 연면적 : 1,121.45m²(지하1층, 지상2층)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997. 2. 28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주서 및 소유권(토지주서) 등 권리명세서 : 별첨

사.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도면 : 강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구 공 고

● 종로구공고제 1996-163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1996-64호(96. 3. 27)로 공람공고한 종로구 보건소 및 구민회관 통합 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계획에 대하여 청사부지 및 진입로로 구분 각각의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도로)로 결정계획변경 및 삼청동 베트남 대사관 앞 도로선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형 일부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 정에 의거 공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아 래 장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에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6. 7. 22~1996. 8. 2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 정비과(731-0385)
		1996. 7. 19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계획(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시설결정면적(m ²)	비 고
시설결정	공용의 청사	창신동 222-8 일대	3,983	• 당초공람공고(안) 중 진입도로부분 제외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계획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결정	중로	3	-	12	78	지봉길 (대3-195)	창신동 248	공용의 청사 및 창신조합 APT 진입로 결정
기정	중로	1	190	20	1,140	소격동 57(대1-3)	가회동 산 1 (중1-33)	베트남대사관 앞 도로선형 일부 조정
변경	"	"	"	"	"	"	"	

다. 도면 : 따로붙임(종로구청 도시정비과
공람공고 도면과 같음 : 생략).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고 그 저분사항을 열
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광진구공고제 1996-119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6조제3호 및 열
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1996. 7. 31

광진구청장

등록번호	품목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사유	청문	처분내역
138	3	강남설비	중곡동 50-3	김재학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83	2	현대설비	중곡동 239-5	이종현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등록번호	품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청문	처분내역
160	2	대우설비	중곡동 147-168	신범철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80	2	천하설비	중곡동 172-16	마재웅	소재불명	참석	등록취소
24	2	경원난방	중곡동 86-24	최수환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11	2	완수설비공사	구의동 232-67	곽종호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231	2	대일종합공사	구의동 241-7	김학근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71	3	성일설비	구의동 229-21	윤성구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52	2	신한설비	구의동 125-11	이재환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51	2	성온설비	자양동 609-16	임성수	소재불명	참석	등록취소
17	3	삼도설비	자양동 636-20	박인근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55	3	전일설비	자양동 219-2	손동욱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34	2	서울난방	자양동 606-9	이성재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93	2	부광설비	자양동 604-1	김덕철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86	3	삼형제설비	자양동 606-38	강봉수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200	1	송림공영	자양동 553-501	최병주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46	1	정화산업사	구의동 254-114	장만주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34	3	동원설비	자양동 222-1	이충재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241	2	한양기업	자양동 658-14	조웅재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86	1	조홍종합건설	구의동 252-57	윤종구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73	2	대성설비	중곡동 138-29	김영길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56	2	한양기공사	중곡동 31-24	이인만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119	2	명진설비	중곡동 172-63	김창섭	소재불명	활석	등록취소
228	2	태일종합설비	중곡동 257-8	전희천	소재불명	불참	등록취소

가. 처분일자 : 96. 7. 19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광진구공고제 1996-120호

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7. 31

광 진 구 청 장

○ 양도인가 내역

양 도 인 가 일	96. 7. 22	인가자	광진구청장
업종 및 면허번호	토공94-서울-02-23, 철콘94-서울-10-25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대 표 자	김 신 기	박 중 식	
상 호	금 태 건 설(주)	과 림 건 설(주)	
영 업 소 재 지	광진구 구의동 547-8	성동구 용답동 228-13	
도 급 한 도 액	토목공사업 : 700,000,000원 철·콘공사업 : 700,000,000원	토목공사업 : 700,000,000원 철·콘공사업 : 700,000,000원	

◎영등포구공고제 1996-151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7. 31

영 등 포 구 청 장

양 도 인 가 일	1996. 7. 22	
업종 및 면허	창호 89-서울-08-09	
인 가 자	영등포구청장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동 일 금 속	동 영 산 업
대 표 자	윤 용 길	김 나 춘
영 업 소 재 지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54	경기도 광주군 조월면 대쌍령리 359-5
도 급 한 도 액	375,322,000원	375,322,000원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서초구공고제1996-21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취소및변경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
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 행정처
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취소 및 변경하였기

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6. 7. 31

서초구청장

○ 변경처분내역

연 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취소 또는 변경처분 내용		비 고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사유	변경처분	사용*	
1	82- 22-1	광운 건설 (주)	백명자	서초동 1543-9 태홍B/D 4층	등록 말소	96. 6.26	- 실적 미달	등록말소 취소	- 93년 실적 110세대 이월로 실적 달성	
2	83- 22-3	덕원 공영 (주)	김만균	서초동 1330-3	등록 말소	96. 6.26	- 실적 미달	등록말소 취소	- 96. 10. 17 건설교통부훈 령 제123호 개정으로 95 년 사업계획승 인문 237세대 실적 인정	
3	90- 22-26	신광 토건 (주)	홍순우	양재동 1-26	영업 정지 6월	96. 6.26	- 실적 미달 (11세대) - 등록기 준위반: 대표자 변경 신고무	영업정지 3월	- 92. 2. 12 대표자 변경 신고 필	

●강남구공고제1996-212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전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7. 31

강남구청장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1996 7. 19	보링그라우딩 공사업 82-14-29	하선개발 (주)	강남구 논현동 86-16	박종천	협신개발 (주)	서초구 방배동 1020-2	고두환

● 송파구공고제 1996 - 15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송파구청장

◎ 양도인가연월일 : 1996년 7월 19일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토공사업

(면허번호 : 92-서울-02-15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 89-서울-10-03)

◎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양도자

· 상 호 : 경보개발(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4-13

· 대표자 : 남수경

○ 양수자

· 상 호 : 남선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1

· 대표자 : 윤정태

● 송파구공고제 1996 - 15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송파구청장

◎ 양도인가연월일 : 1996년 7월 22일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 92-서울-10-87)

◎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양도자

· 상 호 : 천세개발(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4

· 대표자 : 이명수

○ 양수자

· 상호 : 대배산업(주)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17

· 대표자 : 김오남

● 송파구공고제 1996 - 15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7. 31

송파구청장

◎ 양도인가연월일 : 1996년 7월 22일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 92-서울-10-15)

◎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양도자

· 상 호 : 협산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4-13

· 대표자 : 이교순

○ 양수자

· 상 호 : (주)중앙산업개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94-39

· 대표자 : 양대우

사업소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6-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7. 31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6. 7. 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선 한강	하천	273m ²	보트장 부대시설	허가일로부터 ~ 96. 12. 3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 (삼안빌딩 9층)	이성진

입찰공고

◎ 구로소방서 공고 제 1996-1호

공사입찰공고

- 공사명 : 구로소방서 오류파출소 이전 신축 공사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96. 8. 7. 14:00
당서 회의실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96. 8. 17.
17:00 당서 소방과
- 입찰일시 및 장소 : 96. 8. 19. 14:00 당
서 회의실
- 입찰방법 : 총액입찰

6. 입찰 참가자격 : 전설법에 의한 건축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본사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자에 한
합니다.

※ 입찰은 상시 및 우편입찰을 병행합니
다. 우편입찰은 입찰일시까지 입찰장소
에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합니
다.

7.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그 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
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
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서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본 공사의 설계액은 ₩690,525,000원(관급 ₩52,568,300 포함)입니다.
10. 추정가격 : ₩637,956,700원
11. 입찰 예비 가격 : ① 637,318,740
 ② 636,042,820
 ③ 634,766,910
 ④ 633,491,000
 ⑤ 632,215,080
 ⑥ 631,577,130
 ⑦ 630,301,210
 ⑧ 629,020,300
 ⑨ 627,749,390
 ⑩ 625,835,520

12. 기타사항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소방과(618-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6. 7. 31
 구로소방서경리관

공문시행

금천구
 (890-2340~3)

문서번호 재무67510-978

시행일자 96. 7. 31

수신처 수신처 창조

제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1.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따로불입의 물품을 금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치하니 회망기관(부서)에서는 계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금천구 청장

수신처 : 서울시(회계과), 서본부 1-4, 서사 1-42, 서구 1-25(재무과)

관리전환물품명세서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자 유
2320-	환경미화원 수하차	D형	대	12	350천원	92. 1. 5	요정비품	운행불필요 (청소과)
2320-	환경미화원 수하차	B형	대	24	350천원	92. 1. 5	요정비품	운행불필요
3610- 237	전자복사기 수하차	대우4300	대	1	2,834천원	93. 7. 19	요정비품	노후화 (가산동)
4610- 000	양수기	DAP 50	대	1	340천원	84. 4. 1	요정비품	노후화 (독산1동)
7105- 009	옷장	2인용	대	2	52.5천원	84. 7. 1	요정비품	노후화 (가산동)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7110-004	탁 자		각	2	10천원	80. 7. 1	요정비품	노 후 화 (가산동)
2340-001	자전거	삼천리 LESCO	대	1	100천원	93. 10. 1	요정비품	노 후 화 (시흥1동)
3610-004	윤전등사기	수동형 KOSTAL	대	1	269천원	90. 12. 17	중 고 품	"
4520-001	난로	로터리식 인버터 SFH4502	대	1	350천원	93. 11. 1	요정비품	"
5805-601	키플전화기	GK816 -DX	대	1	115천원	93. 11. 1	중 고 품	"
5830-012	메가폰전자	B-2종 의 3종	대	12	124천원	85. 11. 3	중 고 품	"
6110-063	무정전전원 장치	UPS TGR- 1103	대	1	5,874천원	95. 6. 20	중 고 품	"
6720-001	카메라 정사진	대우 AFJ2D	대	1	150천원	92. 2. 28	"	"
6720-001	카메라 정사진	대우 JMIMI	대	1	120천원	92. 2. 1	"	"
6730-004	환등기	고닥CAR 26US-2T	대	1	80천원	80. 4. 4	"	"
7110-005	의자	철재1인 접의자	각	2	264천원	90. 8. 8	"	"
7110-005	의자	민원접대 용1인용	각	8	67.5천원	90. 8. 8	"	"
7430-001	탁자기	수동형 (GTS- 7500)	대	1	499천원	90. 12. 17	"	"
7440-204	프린터	정밀 JEPCOM	대	1	450천원	91. 8. 2	"	"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7440-300	컴퓨터	개인PC GUSE088 +G	대	2	572천원	94. 12. 3	중 고 품	노 후 화 (시흥1동)
7430-004	앰프	SA-3000S	대	1	100천원	85. 1. 5	요정비품	노 후 화 (시흥3동)
3610-015	운전동사기 (전동)	D-815	대	1	330천원	87. 2. 19	요정비품	노 후 화 (시흥2동)
5835-100	녹화기	GHV9200	대	1	100천원	89. 2. 15	중 고 품	"
6770-114	부등비접시 수동저울	50KG	대	1	50천원	89. 2. 19	중 고 품	"
7110-001	금고	철재	대	1	280천원	86. 4. 17	요정비품	"
7310-065	냉장고	금성 422BF	대	1	523천원	91. 7. 20	요정비품	"
7440-204	프린터	JP-3400 KOC	대	1	522천원	92. 9. 2	요정비품	"
7440-310	컴퓨터	286	대	1	900천원	92. 2. 11	중 고 품	"
7730-003	텔레비전	14인치	대	1	200천원	86. 4. 8	요정비품	수리한계 초 과
7110-003	책상	강제양수	개	2	194천원	80. 7. 1	요정비품	수리한계초 과(시흥4동)
3610-237	전자복사기	DT5300S	대	1	1,456천원	89. 10. 10	요정비품	노 후 화 (시흥4동)
3610-237	전자복사기	FT4800S	대	1	3,000천원	91. 8. 30	중 고 품	"
7440-300	컴퓨터	XT-88G	대	4	990천원	89. 9. 1	중 고 품	"
7440-204	프린터	GP 2800	대	4	300천원	89. 9. 1	중 고 품	"

제 1986 호

시

보

1996.7.31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6110-063	무정전 전원 장치	UX-130	대	1	1,300천원	89. 9. 1	중 고 품	노 후 화 (시흥4동)
7440-204	프린터	레이저	대	1	1,590천원	91. 10. 9	요정비품	노 후 화 (시흥본동)
7440-204	프린터	GP 2800	대	2	900천원	89. 4. 5	요정비품	"
4140-001	선풍기	스탠드형	대	1	27천원	80. 7. 20	중 고 품	노 후 화 (독산2동)
7110-002	캐비넷	일반형	대	4	70천원	92. 10. 8	중 고 품	"
7730-004	앰프	슈퍼스트	대	1	50천원	85. 6. 30	중 고 품	수리한계 초 과
7440-204	프린터	GP-2800	대	1	300천원	92. 9. 3	중 고 품	노 후 화 (독산4동)
4520-001	난로	석유 0.25ℓ	개	1	25천원	86. 1. 3	요정비품	수리한계초 과(독산3동)
4520-001	난로	석유 1ℓ	개	1	50천원	86. 1. 3	요정비품	"
4520-001	난로	석유 2ℓ	개	1	200천원	86. 1. 3	요정비품	"
7440-204	프린터	GP2800	대	1	913천원	89. 4. 11	중 고 품	수리한계 초 과
7110-003	책상	양수목재	개	1	50천원	81. 12. 30	중 고 품	미 사용
7110-002	캐비넷	일반형	대	7	40천원	81. 12. 30	요정비품	"
7110-002	캐비넷	일반형	대	4	78천원	82. 5. 25	중 고 품	"
2340-001	자전거		대	1	100천원	92. 3. 1	요정비품	미 사용 (독산본동)

제 1980 호

사

보

1996. 7. 31

분류번호 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 사유
4520-001	난로	석유	개	1	230천원	89. 11. 1	중고품	미사용 (독산본동)
5805-003	전화기	일반형	대	1	30천원	88. 1. 10	중고품	"
6110-022	전압조정기	TCR1103	대	1	528천원	91. 5. 1	요정비품	노후화 (독산본동)
7110-003	책상	3종	개	2	80천원	93. 1. 10	중고품	"
7490-033	자동인증기	PC-7	대	1	1,699천원	93. 1. 10	요정비품	"
6240-008	메탈 램프	220V/ 400W	개	706	17,560원		폐 품	활용불가 (토목과)
6240-007	나트륨램프	220V/ 400W	개	161	14,290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7	"	220V/ 250W	개	258	12,640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7	"	220V/135 W(저압)	개	80	29,229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7	"	220V/90 W(저압)	개	20	28,000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7	"	220V/ 50W	개	1,501	8,790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7	"	220V/ 100W	개	3	10,990원		폐 품	활용불가
6240-008	메탈안정기	220V/ 400W	개	538	29,680원		폐 품	재활용불가 (토목과)
6240-007	나트륨 안정 기	220V/ 400W	개	85	20,340원		폐 품	"
6240-007	나트륨 안정 기	220V/ 250W	개	194	16,500원		폐 품	"
6240-007	나트륨안정 기(터널용)	220V/ 135W	개	10	35,020원		폐 품	"

제 1986 호

시

보

1996.7.31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사유
6240-007	나트륨안정기(터널용)	220V/ 90W	개	2	27,200원		폐 품	재활용불가 (토 목 과)
6240-007	나트륨 안정기	220V/ 50W	개	839	14,290원		폐 품	"
6240-007	나트륨 안정기	220V/ 100W	개	3	14,300원		폐 품	"
6250-116.	가로등기구	세조로 대형	개	17	47,960원		폐 품	"
6250-116	육교등기구	갓 형	개	12	26,00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주	원형 9m	개	7	203,63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주	원형 9m (구형)	개	3	203,63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주	원형 10m	개	2	216,42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주	팔각 10m	개	3	225,49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주	운형 12m	개	2	236,220원		폐 품	활용불가
6250-050	가로등 전원 함		면	27	1,500,000원		폐 품	재활용불가 (토 목 과)
6250-116	보안등 등기 구	확산형	개	442	19,870원		폐 품	"
6210-	보안등 스위 치 박스		개	534	7,000원		폐 품	"
6210-019	자동점멸기		개	50	36,800원		폐 품	"
6210-019	일광점멸기	3A, 6A	개	1,826	3,490원		폐 품	"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	마그넷 스위치	SMC-35	개	2	26,200원		폐 품	재활용불가 (토 목 과)
-	마그넷 스위치	SMC-10	개	2	10,000원		폐 품	"
-	N. F. B	2P 100A	개	2	15,800원		폐 품	활용불가
-	N. F. B	2P 50A	개	1	12,513원		폐 품	활용불가
-	N. F. B	1P 50A	개	7	19,280원		폐 품	활용불가

서초소방서

(532-0082)

문서번호 : 소방 43550-781

시행일자 : 1996. 7. 31

제 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서초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을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오니 회항

기관에서는 계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처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리전환 물품명세서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3610-237	전자 복사기	FT4830S	대	1	2,772,000	92. 8. 29	요정비	과다사용 및 노후
5805-166	차량무선 전화기	VTR 8300	대	1	524,000	88. 7. 6	"	
4930-001	주유기	mW-3V=27	대	2	3,076,990	79. 12. 27	"	

<p>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032-561-3546~7)</p> <p>문서번호 시설 67512-1943</p> <p>시행일자 1996. 7. 31.</p> <p>받 음 받는 곳 참조</p> <p>제 목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알림</p> <p>제42회 조합회의(96. 7. 5)에서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을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1부</p> <p>받는곳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p> <p>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p> <p>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을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p> <p>제정1992. 3. 28. 규정 제7호 개정1992. 10. 13. 규정 제8호 개정1996. 7. 9. 규정 제35호</p> <p>제1조(목적)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폐기물의 일시 반입제한, 반입허용 이외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의 반입금지, 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증과 계량카드의 발행, 계량카드의 타인 대여 금지, 위반시의 조치내용, 자치단체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매립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여 폐기물을 반입이 허용된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이하 "반입허용자"라 한다)와 매립지 운영관리 관련 역무 분담자에게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의 일시 반입제한) ①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폐기물 반입허용자에게 폐기물을 반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반입 허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최종처리가 불가능할 때 2. 화재발생 등 매립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3. 기타 사정으로 폐기물 최종처리가 불가능할 때 <p>② 조합장은 폐기물을 반입의 일시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중단일시, 중단기간, 중단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기간이 5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회의에 보고하고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에 불법폐기물이 수집, 운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조합장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지도, 감독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p> <p>③ 매립지운영관리자 등("조합장" 및 해당 역무분담자 포함"이라 같다)은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감시, 시험, 검사대 운영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이 반입된 때에는 반입증거(운전자, 확인서, 징취, 사진촬영 등)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출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5조(불법폐기물을 반출 등의 대처책) ① 조합장은 제4조제3항의 불법폐기물이 24시간 이상 미반출로 매립지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처책</p>

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의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전항의 대질행은 행정대집행법의 해당 절차 등을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반입차량등록) ① 조합장은 매립지에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기타 운반차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와 조합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반입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등록의무자라 함은 시·군·구 청장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본부장)을 말한다.

제7조(반입허용차량) ①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을 세차하여 청결한 차량
2. 적재함이 밀폐되고 천개장치를 하여 악취발산, 폐기물의 비산, 해충 발생방지 및 침출오수 누수방지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가 완비된 차량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소지한 등록된 차량

② 조합장은 전항 각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매립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 단체(여타기관 포함, 이하 같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절차 등) 폐기물관리법상 자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폐기물의 반입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①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업체 및 여타차량)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은 반입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가 해당차량의 것인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매립지 운영관리자 등은 불법폐기물 또는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운반차량과 해당차량 계량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한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회수한다.

② 전항의 계량카드를 회수한 때에는 “별표 제4호”와 같이 본 매립지에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부 칙(1992. 3. 28 규정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13 규정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9 규정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 발령

정부인사 발령통지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 지방시설서기관 조인원(趙仁元) 시설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장에 보함

1996. 7.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국 시설서기관 박필용(朴必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p>1996. 7. 12 대통령 서울특별시장</p> <p>기업행정직 8·9급 공무원 면직 발령 제421호(1996. 7. 20)</p> <p>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지방기 업행정서기 이명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 함</p> <p>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 업행정서기로 김미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 함</p> <p>서울특별시장</p> <p>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22호(1996. 7. 22)</p> <p>하수처리과 기방토목주사 김남수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p> <p>서울특별시장</p> <p>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출·입 발령 제423호(1996. 7. 31)</p> <p>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건축주 사보 이종진 부산광역시 전출</p> <p>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건축주사보 신명 승 서울특별시 전입 건설안전관리본부</p> <p>서울특별시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 홍 순화 전라북도 전출</p> <p>전라북도 김제시 지방간호주사보 이두선 서울특별시 전입 지방간호서기 서대문병원</p> <p>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 이지 숙 전라남도 전출</p> <p>전라남도 구례군 지방간호주사보 박규금 서울특별시 전입 지방간호서기 동부병원</p> <p>서울특별시장</p> <p>기능직 공무원 파견 발령 제425호(1996. 7. 25)</p>	<p>경찰청 지방운전원(10등급) 이신해 영등 포구 파견근무를 면함</p> <p>서울특별시장</p> <p>7급이하 행정직군공무원 승진임용 발령 제454호(1996. 8. 1)</p> <p>공보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전재선 지방 행정주사</p> <p>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선 지방행정주사</p> <p>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오 지방 행정주사</p> <p>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경윤 지방 행정주사</p> <p>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학 지방행정 주사</p> <p>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지종천 지방행정 주사</p> <p>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인선 지방 행정주사</p> <p>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재동 지방행정 주사</p> <p>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승태 지방행정 주사</p> <p>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상민 지방행정 주사</p> <p>사회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종도 지방 행정주사</p> <p>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장식 지방행정 주사</p> <p>재산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인세 지방 행정주사</p> <p>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안용석 지방 행정주사</p> <p>사회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희린 지방행정 주사</p> <p>가정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애자 지방 행정주사</p>
---	---

여성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장화영 지방 행정주사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장치문 지방행정주사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언 지방행정주사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신동백 지방행정주사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진범 지방행정주사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유성찬 지방행정주사
농수산유통과 지방행정주사보 정경표 지방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보 채윤 지방행정주사
국제교류과 지방행정주사보 백동섭 지방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보 곽효문 지방행정주사
국제교류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명운 지방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중규 지방행정주사
환경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윤경화 지방행정주사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윤석교 지방행정주사
폐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송문규 지방행정주사	보천환경연구원 지방행정주사보 전동은 지방행정주사
폐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기환 지방행정주사	동부병원 지방행정주사보 장승순 지방행정주사
재활용과 지방행정주사보 주종문 지방행정주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홍남 지방행정주사
폐기물시설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성근 지방행정주사	교동방송본부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수 지방행정주사
대중교통1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원빈 지방행정주사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철 지방행정주사
대중교통2과 지방행정주사보 나기득 지방행정주사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유임춘 지방행정주사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찬규 지방행정주사	단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영태 지방행정주사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보 최홍섭 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한광훈 지방행정주사보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보 이동욱 지방행정주사	인사과 지방행정서기 이선경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주사보 김용관 지방행정주사	농수산유통과 지방행정서기 이금숙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이석 지방행정주사	대중교통1과 지방행정서기 신의수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주사보 박병현 지방행정주사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서기 박경애 지방행정주사보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서기 이영미 지방 행정주사보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양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노부소 지방행정주사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박효운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이희천 지방행정주사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김기홍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유세종 지방행정주사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엄기성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이승득 지방행정주사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홍운미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김승현 지방행정주사보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성백종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고경석 지방행정주사보	정신병원 지방행정서기 김낙기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손태준 지방행정주사보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 오관홍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곽인환 지방행정주사보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 최영미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김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청소년직업훈련전문학교 지방행정서기 윤경란 지방행정주사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 임남수 지방행정주사보	공업시험소 지방행정서기 신보희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이형우 지방행정주사보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 백종문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육언조 지방행정주사보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 김수경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 강동준 지방행정주사보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권자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 이효실 지방행정주사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서울시립대학교 지방행정서기 박영찬 지방행정주사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삼중 지방행정주사보
서울시립대학교 지방행정서기 이재원 지방행정주사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문훈기 지방행정주사보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서기 송영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오지미 지방행정주사보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서기 김진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홍재 지방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권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보 최희곤 지방행정서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미혜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보 김준민 지방행정서기
차량정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남인현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보 윤희정 지방행정서기
교통방송본부 지방행정서기 김갑순 지방행정주사보	서울시립대학교 지방행정서기보 차정윤 지방행정서기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기동 지방행정주사보	전자재산소 지방행정서기보 김홍식 지방행정서기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용이 지방행정주사보	전자재산소 지방행정서기보 김성호 지방행정서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정봉 지방행정주사보	전자재산소 지방행정서기보 박은정 지방행정서기
보도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이남열 지방행정서기	전자재산소 지방행정서기보 조경미 지방행정서기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김재연 지방행정서기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보 조용만 지방행정서기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배희정 지방행정서기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보 조미선 지방행정서기
총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강현경 지방행정서기	아동병원 지방행정서기보 서인석 지방행정서기
시민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은정 지방행정서기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보 백종이 지방행정서기
국제교류과 지방행정서기보 강윤애 지방행정서기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보 문호근 지방행정서기
국제교류과 지방행정서기보 오미영 지방행정서기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보 권우정 지방행정서기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보 창기주 지방행정서기	구로부녀복지관 지방행정서기보 민선희 지방행정서기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보 김석기 지방행정서기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보 김태형 지방행정서기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보 김은희 지방행정서기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보 신은주 지방행정서기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서기보 최영학 지방행정서기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보 장우선 지방행정서기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보 홍수열 지방행정서기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정 지방행정서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장만석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오영수 지방기업행정주사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문철오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수완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강득수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주영석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대희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승배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관순구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허동목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운영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송재원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백일선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최해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차량정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문승수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고창호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차량정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종오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오진용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차량정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성민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양갑진 지방기업행정주사보
교통방송본부 지방행정서기보 이걸용 지방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병상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세무행정과 지방세무주사보 일창순 지방세무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임경선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세무운영과 지방세무주사보 윤영공 지방세무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장철상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세무운영과 지방세무주사보 전철수 지방세무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한주환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세무운영과 지방세무주사보 강신국 지방세무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병현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이오열 지방기업행정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정원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박찬규 지방기업행정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수동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정해복 지방기업행정주사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임홍희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달웅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배광선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최우섭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인강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천홍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황영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홍순익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백형기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지선병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손창두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송기용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최영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안창한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성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환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기돈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시용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희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남상규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한병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병호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홍동섭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오형용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태수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재영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경환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방형내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혜숙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정권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장언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오종근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정태명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서동찬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광석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유진국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전한실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조수남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최선희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남기송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승태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제 1986 호

시

보

1996. 7. 31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한정환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박홍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문선희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손광언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임의석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이병우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김기곤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 최승관
지방기업행정주사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보 박생
수 지방기업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보 이재
우 지방기업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보 허홍
식 지방기업행정서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서기보 오혁
준 지방기업행정서기

서울특별시장

정정개재

서울특별시보 제1978호(1996. 6. 20일자)
의 내용 중 일부 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996. 7. 31

서울특별시장

구 분	누 락 내 용																		
47-41쪽 중 동작 구공고 제1996- 100호 하단에서 19행 다. 대수선 에 관한 사항 다음에 4.항 5.항 내용 누락	4. 대상구역: 도면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th> <th>214,000</th> <th></th> </tr> </thead> <tbody> <tr> <td>신대방지구중심</td> <td>신대방동 405 일대</td> <td>64,000</td> <td></td> </tr> <tr> <td>사당 지구중심</td> <td>사당동 147 일대</td> <td>102,000</td> <td></td> </tr> <tr> <td>남현 지구중심</td> <td>사당동 1042 일대</td> <td>48,000</td> <td></td> </tr> </tbody> </table> 5. 기타 세부사항(관련도면 및 전축허가 제한범위)은 우리 구 도시정 비과나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계		214,000		신대방지구중심	신대방동 405 일대	64,000		사당 지구중심	사당동 147 일대	102,000		남현 지구중심	사당동 1042 일대	48,000	
계		214,000																	
신대방지구중심	신대방동 405 일대	64,000																	
사당 지구중심	사당동 147 일대	102,000																	
남현 지구중심	사당동 1042 일대	48,000																	